

# 2020년도 전임교원 특별공개초빙 세부심사기준

## 1. 기초심사 : 최종 학위논문 또는 연구실적물의 전공적부 심사

※ 심사위원 3분의 2 이상이 최종학위논문과 연구실적물에 대해 “부”로 판정한 경우에 부적격자로 함

## 2. 전공심사

### 1) 인터넷 접수 마감일 전월 말일 기준 4년 이내(2016. 7. 1. ~ 2020. 6. 30.) 연구실적의 질적 심사(40점)

#### 가. 게재학술지 수준

○ 점수 계산 방식 : 학술지 수준 점수 × 인정비율

○ 학술지 수준 점수

- 인문·사회계 : A급 50점, B급 47점, C급 45점, D급 40점, E급 30점

① 연구실적 인정비율은 초빙분야의 계열(인문·사회계열)에 따라 [별표 3]을 적용함

② 질적심사 대상 연구실적물 200%는 최근 4년 이내 연구실적물 중 “특별공개초빙분야 질적 심사대상 연구실적물 수준”에 적합한 우수논문 순으로 지원자가 지정하되 주저자(단독저자, 제1저자, 교신저자)만 인정 (단, 지원자가 주저자인 NATURE, SCIENCE, CELL 게재논문은 1편으로도 질적심사가 가능함)

- 제1저자 : 저자명이 논문의 저자 목록에서 가장 먼저 명기되거나 논문의 주(註)에 가장 앞에 표기된 경우만 인정함. 다만, 논문의 저자 목록에서 가장 먼저 표기된 경우라도 논문의 주(註)에 별도로 제1저자가 표기된 경우에는 논문의 주(註)에 표기된 자를 제1저자로 인정
  - 교신저자 : 논문의 주(註)에 교신저자로 표기된 경우만 인정. 다만, 교신저자 표기가 없는 경우에도 해당저널에서 발행한 확인서 등 교신저자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경우는 인정
  - 공동주저자 : 주저자가 3인 이상인 경우 모든 주저자를 공동주저자라 함
    - 3인 이상이 공동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인 논문의 경우, 모든 주저자에게 공동저자의 인정비율을 적용함 (단, 자연계열의 IF 상위 10% 이내의 논문은 주저자가 3인 이상인 경우에도 주저자 비율을 적용함)
- ※ 학술지 IF % 값 산출은 JCR랭킹을 기준으로 함.

#### □ 특별공개초빙 분야 질적심사 대상 연구실적물 수준

○ 중국학(사회·문화)

- A급 : SSCI, SCI(E) (IF 20% 이내), A&HCI 등재지
- B급 : SSCI, SCI(E) 등재지(IF 20% 초과 50% 이내)
- C급 : SSCI, SCI(E) 등재지(IF 50% 초과)
- D급 : SCOPUS 등재지
- E급 :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및 G20 국가발행 국제학술지

#### 나. 논문의 질 : (25점, 22점, 19점, 16점 중 택일) × 인정비율

- 평가요소는 전계열 공통으로 ①논문의 독창성 ②실험과 이론의 상응 정도 ③논문의 객관성과 충실도 ④논리적 엄밀성 ⑤결론의 실용성(창의성 및 타당성)으로 함

#### 다. 전공일치도 및 지원자의 논문기여도 : (25점, 22점, 21점, 18점 중 택일) × 인정비율

2) 인터넷 접수 마감일 전월 말일 기준 4년 이내(2016. 7. 1. ~ 2020. 6. 30.) 연구실적의 양적 심사(10점)

가. 연구실적물 인정

- 1) 연구실적 인정비율은 초빙분야의 계열(인문·사회계열)에 따라 [별표 3]을 적용함
- 2) “특별공개초빙 분야 양적심사대상 연구실적물 수준” 에서 정한 연구실적물을 대상으로 하되 **주저자만 인정**  
**※ 학술지 IF % 값 산출은 JCR랭킹을 기준으로 함**

특별공개초빙 분야 양적심사 대상 연구실적물 수준

초빙분야	학술지	비고
중국학(사회·문화)	SSCI, A&HCI, SCI(E), SCOPUS 등재 국제학술지,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G20 국가발행 국제학술지	

나. 특별공개초빙 분야 양적심사 평가배점

구 분	10점	9점	8점	7점	6점	5점
특별공개초빙	1,000% 이상	900% 이상 ~ 1,000% 미만	800% 이상 ~ 900% 미만	700% 이상 ~ 800% 미만	600% 이상 ~ 700% 미만	600% 미만

(단, 지원자가 NATURE, SCIENCE, CELL 게재 논문의 주저자인 경우는 연구실적의 양적심사 점수를 만점으로 함)

3. 공개강의 및 세미나 심사(40점)

구 분	평가항목
일반 분야 (40점)	① 강의의 능숙도 및 완성도 (영어, 기타 외국어 및 한국어) ② 준비의 충실도 및 강의의 적절성 ③ 학문적 우수성 ④ 독자적 연구능력 및 전공분야 기여가능성

4. 면접 심사(10점)

- 가. 분야별 공개강의 및 세미나 심사 대상자 중에서 최고득점자를 면접심사 대상자로 하되, 심사 결과 점수 차가 최고 득점과 **3점 미만**인 자에 한하여 최고득점자와 함께 면접 심사를 실시함
- 나. 교육자로서의 인격과 품위, 의사소통 능력, 교육 및 연구능력, 임용 후 본교 기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함
- 다. 면접 대상자가 2명 이상일 경우 총 점수(전공 및 경력 심사, 공개강의 및 세미나 심사, 면접 심사)합이 높은 사람을 합격으로 함

[별표 1]

연구실적연수환산율 산출기준

경 력 내 용	환산 인정률
<p>[1]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 이라 함)제4조 제1항 제2호의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한 연구기관이나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시설에서 전임으로 연구에 종사한 실적’</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교수로 근무한 경력</li> <li>2. 사관학교의 교관(부교수 이상의 교수에 한함)으로 근무한 경력</li> <li>3. 다음 각 목의 연구원 등에서 전임연구원으로 근무한 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li> <li>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li> <li>다. 「특정연구기관육성법」 및 동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연구기관</li> <li>라. 기타 법률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체로서의 연구기관</li> </ul> </li> <li>4. 박사학위 과정 이수자가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을 경우, 석사 및 박사 재학기간(석·박사과정을 합하여 5년을 초과하지 못함)</li> <li>5. 석사학위 과정 이수자가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을 경우, 석사과정 재학기간(2년을 초과하지 못함)</li> </ol>	100%
<p>[2] 규정 제4조 제1항 제3호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관 또는 시설에서 연구를 주로 하거나 전문학식을 필요로 하는 직무에 종사한 실적’</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학력인정을 받지 못한 전문대학 이상의 각종학교에서 전임교원으로 근무한 경력</li> <li>2.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시간강사, 초빙교원, 겸임교원 등 교육 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시간강사는 주당 5시간 이하는 30%, 주당 5시간 초과 시에는 시간당 10% 가산하되 50%를 넘지 못함.</li> <li>② 비전임교원은 상근인 경우는 100%, 비상근인 경우는 시간강사 경력에 준해서 인정함</li> </ul> </li> </ol>	60%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3. 중·고등학교 교원으로 근무한 교육경력이 대학에서 담당할 과목과 부합되는 경우</li> <li>4. 3년제 고등기술학교 및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교육경력이 대학에서 담당할 과목과 부합되는 경우</li> <li>5. 초등학교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대학에서 담당할 과목과 연계되는 경우</li> <li>6. 유치원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대학에서 담당할 과목과 연계되는 경우</li> <li>7. 대학의 총장 또는 학장의 발령에 의하여 조교로 근무한 경력</li> <li>8. 공인된 체육단체(공인단체의 체육팀 포함) 및 각 대학의 체육코치</li> <li>9.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자로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자의 석사 및 박사과정 재학기간(석·박사과정을 합하여 5년을 초과하지 못함)</li> <li>10. 대학원 석사과정 수료자로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자의 석사과정 재학기간(2년을 초과하지 못함)</li> <li>11. 외국인으로서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 교육을 목적으로 전일제(주당 15시간 이상 시간제 포함)로 근무한 경력이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과 연계되는 경우</li> </ol>	70%

경 력 내 용	환산 인정률
<p>[3] 규정 제4조 제1항 제4호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산업체에서 전공학과 및 그에 관련되는 학과의 학문분야에 해당하는 직무에 종사한 경력’</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를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국영기업체 또는 공공단체)에서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li> <li>2. 법학실무교원으로 지원한 자가 판사·검사·변호사로 근무한 경력</li> <li>3.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따라 지정받은 지정교육기관 중 대학에서 교육을 받은 자로서 1급 이상 해기사 면허 소지자의 국제항해 승선경력 및 「항공법」 제29조의3에 따라 지정받은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에서 비행교육에 종사한 경력</li> </ol>	100%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4.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를 국가기관(시설 및 준경력 포함)에서 당해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직무에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li> <li>5. 다음 각 목의 민간 산업체에서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와 관련된 직무에 종사한 경력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공업, 기타 제조업, 광업, 운송업, 건설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경영하는 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이 확인한 업체</li> <li>나. 공업, 기타 제조업, 광업, 운송업, 건설업종 이외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상인 기관임을 공공기관이 확인한 업체</li> </ol> </li> <li>6. 판사·검사로 근무한 경력</li> <li>7.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변리사·건축사의 개업기간</li> <li>8. 「국가기술자격법」 및 동 시행령에 따른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해당 기술분야에서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대학 또는 대학원의 전공과목과 근무경력이 부합되고 전문대학 교원으로서 담당할 과목이 이에 연계될 수 있는 경우</li> <li>9.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운영하는 병원 또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인턴 또는 레지던트로 근무한 경력</li> <li>10.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포함),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 포함), 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 포함) 또는 수의과대학(수의학부 포함) 졸업자의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또는 동물병원 개업기간</li> <li>11. 국가, 공공단체 또는 해당 학교장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전문의로 근무한 경력</li> <li>12.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운영하는 병원 또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전임 간호사로 근무한 경력</li> <li>13. 신학대학 졸업자가 목사 또는 신부로 재직하거나, 대학 불교학과 졸업자가 사찰에서 승려로 재직한 경력</li> <li>14. 외국공관에서 근무한 경력</li> <li>15. 공인된 상설 예·체능 및 창작·실기에 관한 단체의 주요간부 근무경력</li> </ol>	70%

연구실적 인정비율(인문·사회계)

(단위 : %)

저자수 \ 게재지	SSCI, SCIE(IF % 구분), A&HCI 등재지			SCOPUS 등재지	한국연구재단등재지, G20국가발행 국제학술지
	20% 이내, A&HCI 등재지	20% 초과 50% 이내	50% 초과		
1인 단독	250	210	180	120	100
2인 공저	170(210)	120(180)	90(150)	60(90)	60(80)
3인 공저	120(180)	90(150)	70(120)	50(80)	40(60)
4인 공저	90(150)	70(120)	60(90)	40(70)	30(50)
5인 공저	70(120)	60(90)	50(80)	30(60)	25(40)
6인 공저	60(120)	50(80)	40(70)	25(50)	20(35)
7인 공저	50(120)	40(70)	30(60)	20(40)	15(30)
8인 이상 공저	40(120)	30(60)	25(50)	15(30)	10(25)

\* 2인 공저 이상의 ( )안은 제1저자 또는 논문에 명기된 교신저자의 인정비율임

\* 3인 이상이 공동주저자인 논문의 경우, 모든 주저자에게 공동저자의 인정비율을 적용함